오산시의회 공고 제2020-28호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 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8월 2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한은경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○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(안 제4조).
- 나.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위촉, 배치,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.

- 라.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, 경비 및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).
- 마.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, 경고 및 선발취소,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0년 8월 28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: 031)8036-8023, ·팩 스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	례	명	: _	오산시	문화관	강해설	설사	운영	및	지원에	관한	조례안	
□ 의견	현제출	자											
O 경	성명(도	단체 ^r	명)	:									
\bigcirc 3	<u> </u>		소	:									
○ ব	현 화	번	호	:									

조례안 내용	찬 성 찬성	여 부 반대	의	견	비고

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한은경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 제8-355호

발의년월일: 2020년 8월 21일

발의의원: 한은경의원

찬 성 의 원 : 장인수, 김명철, 이상복,

성길용, 이성혁 의원

□ 제안이유

○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(안 제4조).
- 나.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위촉, 배치,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.
- 라.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, 경비 및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).
- 마.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, 경고 및 선발취소,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 - 「관광진흥법」,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,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, 「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 및 배치·활용에 관한 고시」 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」

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 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문화관광자원"이란 오산시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.
- 2. "문화관광해설사"란 오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,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·문화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,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6에 따 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 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8조의 8에 따라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선발하고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(이하 "해설사"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선발해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시·청각장애인의 관광 지원과 편의를 위하여 시·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) 시장은 시 관광객의 규모, 관광자원의 보

유현황,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직무)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
- 2. 관광객들의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
- 3.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
- 4. 시의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수행
- 5.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광안내와 홍보활동 수행
-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·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 및 해설활동을 수행하며,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- 제7조(해설사 선발 및 위촉)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 및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되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해 위촉한다.
 - 1.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- 2. 시의 역사, 문화, 관광, 생태환경 등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
 - 3.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사람
 - 4.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
 - 5.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사람
 - ② 해설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.
 - ③ 제16조에 따라 해설사 선발이 취소 된 경우 위촉이 해제 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해설사 배치)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의 개설·운영 및 배치·활용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오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제9조(활동수행) 해설사가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용모가 단정한 상태로 정해진 활동복을 착용하고 활동하여야 한다. 다 만, 활동일 당일 기후에 따라 활동복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2.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를 패용해야 하며, 이를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3. 시에서 지원하는 장비와 기자재, 시설물 등이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4. 당일 활동사항을 활동일지에 기록하고, 활동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10조(교육) ①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,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 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1조(경비지원)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식비,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
 - 2. 활동복 지급(2년에 한차례)
 - 3.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
 - 4.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
 - 5. 직무 수행에 따른 상해보험 의무적 가입 및 보험료
 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 -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·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2조(활동시간 등) ① 해설사의 활동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. 다만, 배치장소 특성에 따라 활동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일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1. 설 및 추석 명절 연휴
 - 2.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간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③ 해설사의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, 배치장소의 여건 및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제13조(활동지원)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인터넷, 모바일 등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
 - 2.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시 관내 문화시설, 문화재,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관람료, 입장료, 주차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
 - 3. 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4조(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)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,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해설사 평가와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,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, 포상자 선발 등 해설사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- 제15조(활동정지)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설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활동정지 기간은 당해연도 위촉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.
 - 1.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및 치료
 - 2. 임신·출산, 육아
 - 3. 직계 존ㆍ비속의 병간호
 - ②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정지를 신청할 때는 활동정지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정지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활동정지 중인 해설사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및 견학 등의 참여, 활동복 지원에서 제외한다.
- 제16조(경고, 선발취소) ① 시장은 해설사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(문화체육관광부)」에 따라 활동 경고 및 해설사 선발을 취소시킬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고 및 해설사 선발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.
 - **제17조(포상)**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활동실적 이 우수한 해설사를 「오산시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 -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정지 신청서

(제15조 제2항 관련)

	성	명			생년월일		
인 적 사 항	주	소					
	연 5	락 처					
신 청 사 항	신 기	청 간	년 년	월 월	일 부터 일 까지 (년	월)
사 항	신 사	청 유					
증 빙 자 료							
상기 본	-인은	위와	같은 사유로 혹	활동정지	를 신청합니다.		
			년	월	일		
					신청인 :		(서명)
오 산 시 장 귀하							

[별표]

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고 및 해설사 선발 취소 기준

(제16조 제2항 관련)

연번	위 반 내 용	조치사항
1	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(불친절, 태도불량 등)	경 고
2	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	"
3	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	"
4	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	"
5	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	"
6	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	"
7	보수・직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	"
8	관광객, 동료, 담당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	"
9	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였거나 거부하였을 경우	"
10	활동정지 신청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	"
11	연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	"
12	해설활동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한 경우	"
13	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"
14	활동정지기간 종료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	"
15	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	"
16	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복을 입지 않고 해설활동을 한 경우	"
17	부주의로 시설물 또는 장비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	"
18	그 밖에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"

1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우	취소
2	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	"
3	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	"
4	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	"
5	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	"
6	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	"
7	활동정지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미복귀한 경우	"
8	건강상 문제로 시장이 지원하는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	"
9	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	"
10	주민등록 주소지를 오산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	"
11	본인이 사망한 경우	"

※ 유료해설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, 사전에 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 침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유료 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경고조치하지 아니한다.

[별첨]

관계법령 발췌서

「관광진흥법」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~ 11의2. (생략)
 - 12. "문화관광해설사"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,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 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48조의4(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·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,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,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48조의6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(開設)하여 운 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 지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 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 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<u>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</u> 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

- 제65조(권한의 위탁)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, 협회, 지역별·업종별 관광협회, 전문 연구·검사기관,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호, 제3호의2,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, 전문 연구·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·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에 관한 권한: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
 - 가. 기본소양, 전문지식,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(이하 이 호에서 "양성교육"이라 한다)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
 - 나.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
 - 다. 강의실,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7. ~ 8. (생략)
 - ② ~ ⑦ (생략)

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

- 제57조의3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 기준) ① 법 제48조의6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・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57조의5(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, 평가 일시 및 장소, 응시원서 접수기간,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순으로 선발한다.
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·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,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한다.
-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「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 운영 및 배치 활용에 관한 고시」
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·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,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 설·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·배치·활용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대해 적용한다.
- 제7조(배치원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지자체의 장"이라 한다)은 문화관광해 설사 배치 시 공정·객관·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, 관광자원의 보유현황,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2. 도보관광, 시티투어, 체험관광,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3.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8조(배치심사위원회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.
 - 1.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서,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
 - 2.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
 -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,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- 제10조(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)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, 활동실적
 - 2.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
 - 3.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
 - 4.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 수여부
 -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1.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,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
 - 2.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
 - 3.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
 -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,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1조(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) <u>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</u>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
 - 2.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, 문화재, 자 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
 - 3.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
 - 4.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2조(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)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,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(문화체육관광부)」

제7조(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발급) 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수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특별시·도·광역자치단체장 명의로 문화관광해설사 ID 카드(표식)를 발급한다.

- ② 문화관광해설사 ID 카드는 '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'(별첨양식⑥)을 준수하여 제작한다.
-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ID 카드가 발급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'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서약서'(별첨양식 ①)를 제출받아야 한다.
-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의 ID 카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.
- 제9조(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)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 광객 규모, 해설서비스 수요, 관광자원 보유 현황,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.
 - 1. 문화관광해설사 배치
 - 2. 신규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
 - 3.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개선 설문조사 계획
 - 4.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관람동선 개발, 장애인 유형별 맞춤 관광해설 프로그램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
 -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,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방식과 인원을 결정하고, 문화관광해설사의 전공분야 및 전문지식, 교통, 해설언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, 문화관광해설사를 특정 장소에 상시 배치해서는 아니 되며, 활동일 1일 기준으로 해설사 1인당 최소 2회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의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
 -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배치장소를 선정할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 사의 활동 영역 확대 차원에서 국 도립공원 등 자연 생태자원 및 숲, 농·어촌 체험관광지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-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보관광코스, 시티투어, 체험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 초·중등 수학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수학여 행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 - ⑧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해설활동 이외의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.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안내소 직원 대신 관광안내소에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단, 대기를 위한 목적으로 관광안내소 활용은가능하다.

- 제10조(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활동비의 지급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'월 5일(총 35시간) 이상, 또는 연간 60일 이상' 으로 한다.
 -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해설역량향상과 관련된 교육 및 수습기 간은 활동일수에 제외된다. 단 식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, 교통비 등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한다.
 -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1.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(활동내역)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문화관광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일반 단순 안내사항(길안내 등) 기재 등 미흡한 경우
 - 3. 주유비, 간식비 등 제9조 제4항에 따른 활동비 이외의 비용
 - 4. 문화관광해설사의 외부보수교육, 워크숍 등의 교육 참여(단, 교통비에 준하는 실비 지급은 가능)
- 제11조(문화관광해설사 관리)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·군·구에서 양성되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해야 한다.
 - ② 특별시·도·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적 관리 및 차기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양식의 활동일지(별첨양식
 - ④)를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공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.
 -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, 교육 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익월 10일전까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(www.ctgs.kr)에 입력해야 한다.
 - ⑤ 특별시, 도,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해설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,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광객 민원분석, 해설사 근태관리를 위한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함.
 -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 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. (별첨양식 ⑤ 활용)
 -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「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」의 행정사항을 준수한다.

- 제12조(문화관광해설사 경고, 취소)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 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기 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.
 -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동 경고 및 취소시킬 수 있다.

1. 경고

- 가.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(불친절, 태도불량 등)
- 나.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
- 다.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
- 라.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
- 마.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바.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
- 사.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
- 아. 관광객 혹은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
- 자.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
- 차.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
- 카. 년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
- 타.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

2. 취소

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나.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
- 다.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
- 라.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
- 마.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
- 바.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
-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제1호 바목 적용 시, 유료해설활동이 자원 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,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전에 (별첨 양식 ⑦ 문화관 광해설사 유료해설활동 신고서)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2항 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취소된 자는 다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선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취소된 시점에서 5년간은 지원 할 수 없다.
-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할 경우 특별시·도·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특별시·도·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종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문화관광해설사 홍보 및 사전예약제도)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터넷, 모바일 등 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,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와 예약방법 등에 관한 안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.
- 제14조(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) ①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 대기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,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 설비, 해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제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들(타지방자치단체 활동 문화관광해설사 포함)에 한하여 관내 문화재 관람료 및 자연공원, 관광지 입장료(주차료)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자원봉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.